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68호 2024. 3. 5.(화)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4-19호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고시	1
남해군 고시 제2024-2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6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4-163호 남해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고시	7
남해군 공고 제2024-208호 남해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
남해군 공고 제2024-267호 소하천 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20
남해군 공고 제2024-296호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1
남해군 공고 제2024-301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5
남해군 공고 제2024-312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	41
남해군 공고 제2024-333호 문항 전원마을 주택용지 재분양 공고	45
남해군 공고 제2024-334호 화계 전원마을 주택용지 분양 공고	47
남해군 공고 제2024-336호 화계 전원마을 근린용지 분양 공고	49
남해군 공고 제2024-342호 노도호 선장 채용 공고	51
남해군 공고 제2024-355호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54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조정실(860-3044, 행정 3044)

고 시

남해군 고시 제 2024 - 19호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고시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섬진강 수계의 수질오염 예방과 공동연대를 통한 수생태계 보전 등을 추진하는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의 운영 규약 일부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2. 21.

남 해 군 수

□ 주요 개정내용

- 운영 규약 제3조제4항 개정(특별기관 지사명칭 개정)
 - 주암댐관리단장, 섬진강댐관리단장 → 주암댐지사장, 섬진강댐지사장
- 운영 규약 제6조제3항 개정(회장임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
 - 임기 취임년도 1월 1일부터 다음에 12월 31일, 1년 연장 가능
- 운영 규약 제8조제4항 신설(회장기관 업무보조자 채용 명문화)
 - 간사는 협의회 업무 보조원 채용할 수 있음
- 운영 규약 제10조제1항 개정(기관명 누락사항 반영 및 지사명칭 개정)
 -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과 섬진강댐지사, 서부지방산림청의 업무담당 부서장을 특별위원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함
- 운영 규약 제14조 개정(예산편성 방법·기간 및 결산보고 구체화)
 -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 편성은 회계연도 공동부담금과 회계 전년도 예상 집행잔액을 기준으로 실무협

의회에서 편성하여 정기총회에서 의결함

- 예산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실무협의회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결산보고

○ 운영규약 부칙 제1항 개정

→ ① (시행일) 이 규약은 2023년 11월 23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붙임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1부. 끝.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안

- 1997. 12. 26. 제정
- 2003. 12. 12. 개정
- 2007. 01. 31. 개정
- 2011. 03. 09. 개정
- 2013. 04. 12. 개정
- 2020. 04. 06. 개정
- 2022. 05. 09. 개정
- 2022. 12. 09. 개정
- 2023. 11. 22.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환경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행정협의회의 명칭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라 칭한다.

제3조(구성)

- ① 협의회를 구성하는 자치단체는 전라북도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 장수군, 전라남도 곡성군, 구례군, 광양시, 경상남도 하동군, 남해군으로 한다.
- ② 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 9인으로 하고, 특별위원 5인으로 하며, 자문위원은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한다.
- ③ 협의회의 위원은 섬진강수계 관계 행정기관인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 장수군, 곡성군, 구례군, 광양시, 하동군, 남해군의 시장·군수로 한다.
- ④ 협의회의 특별위원은 수질보전관련 정보제공 및 협조를 위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전북지방환경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장, 서부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⑤협회의 자문위원은 협의회 소속 시·군 의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거쳐 협의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사무소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둔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관계 자치단체 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주민 및 산업체간의 수질로 인한 이해관계 조정
2. 섬진강수질보전을 위한 관계 기관 역할 부담에 관한 사항
3. 섬진강 수계 및 연안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수습 대처방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질보전 및 개선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협의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장)

①회장은 광양시, 하동군, 순창군, 남원시, 곡성군, 구례군, 남해군, 진안군, 임실군, 장수군으로 윤번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 결정하고 시장·군수가 역임한다.

②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취임년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연장할 수 있다.

④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는 해당기관 소속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①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반기 1회(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장은 협의회에서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총회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회원 과반수가 협의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환경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록 작성 관리 임무를 담당한다.

④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기간제 업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협의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및 이해 당사자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자치단체의 환경업무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와 섬진강댐지사, 서부지방산림청의 업무 담당 부서장을 특별위원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②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환경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 안건의 실무 검토의견서를 협의위원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다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안건 중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실무 협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경비부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원기관 공동 부담금으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특별)기관 참여자의 여비는 해당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제12조(공동부담금 확보 등)

①협의회 운영규약 제7조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사업에 대하여는 각 회원기관별로 부담금 경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공동부담금은 협의회 회장기관의 예산에 편성하거나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공동부담금의 지출) 공동부담금은 협의회 운영규약 제7조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사업의 경비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비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다.

제14조(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①회계연도는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예산편성은 회계연도 공동부담금과 회계 전년도 예상 집행잔액을 기준으로 회계 전년도 하반기 실무협의회에서 편성하여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

③예산 집행결과는 회계 다음년도 상반기 실무협의회를 거쳐 정기 총회에 결산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지급) 자문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제16조(보칙) 이 규약에 규정한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약은 2023년 11월 23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약은 시행전일까지 종전의 규약에 따라 자치단체 상호간 합의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규약에 의한 것으로 본다.

남해군 고시 제 2024 - 2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6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화천(지방하천)
2. 성 명 : 남해군수(해양발전과장)
3.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4. 점용목적 : 어촌뉴딜사업 공작물 설치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56-1
6. 점용면적 : 일시점용 4㎡, 영구점용 4㎡
7. 점용기간 : 2024. 2. 26. ~ 2028. 2. 25.

공 고

남해군 공고 제 2024 - 163호

남해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고시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 15조 및 제17조에 따라 2024년 남해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단위단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2일

남 해 군 수

1. 대상지역 : 하수처리구역 내

2. 부과대상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오수가 1일 10m³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
-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자

3. 2024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2,320,000원/m³
-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 2,945,000원/m³

※ 다만, 타 행위로 인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 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 단가 산정에 반영되지 못한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은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 부과 외 추가적인 공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4.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남해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5조(개별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제17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 ※ 원인자부담금(원) = 1일오수발생량(m³)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m³·일))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 [환경부 고시 제2021-59호, 2021.3.30.]」을 기초로 산정

5. 시 행 일

- 이 부과 기준은 2024년 2월 22일 이후 부과부터 시행
- 시행일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는 종전단가 적용

6. 문의사항 : 남해군 상하수도과 관리운영팀 (☎055-860-8823)

남해군 공고 제 2024 - 208호

남해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경관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경관조례」

2. 개정이유

남해군 경관계획이 수립 완료됨에 따라 경관계획에 부합하게 관련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경관위원회 및 경관심의 운영에 실효성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관지침 정의 삭제(안 제2조)
- 경관계획의 내용 명칭변경(안 제5조, 제28조)
 - 내 용 : ‘경관지침’을 ‘제32조에 따른 경관심의 매뉴얼’로 변경
- 건축물의 경관심의 제외 대상 및 변경 사항(안 제23조)
 - 내 용 :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제외 지구·규모 규정 및 심의 대상 변경
- 경관위원회 위원의 제척 근거 마련(안 제24조의1)
 - 내 용 : 경관심의·자문 등 구성 위원의 이해당사자 참여를 제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목적
- 경관위원회 서면 심의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26조)
 - 내 용 : 경관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면 심의 근거 신설

- 경관위원회 중복사항 삭제(안 제29조)
 - 내 용 : 심의와 자문 대상 중복 사항 정리
- 경관위원회 사전검토 근거 마련(안 제29조의2)
 - 내 용 : 경관심의 및 자문대상 사전검토 근거 확보
- 경관심의 메뉴얼 마련(안 제32조)
 - 내 용 :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경관심의 메뉴얼 준수 규정 마련으로 실효성 확보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4년 3월 12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487, 팩스 055-860-373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도시건축과 건축행정팀(전화 055-860-34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호 중 “필요한 경관지침” 을 “제32조에 따른 경관심의 매뉴얼” 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별표로 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경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른 자연취락 지구 내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건축물
 3.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의 건축물
 4.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5. 층수가 2층 미만이고 연면적 330㎡ 미만의 건축물
 6. 건축물의 외부디자인(형태, 소재, 색채 등)이 100분의 30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
 7.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의 변경사항이 기존 면적, 층수, 높이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업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4. 그 밖에 군수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 ⑤ 경관위원회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수행할 수 있다.

제28조제3호 중 “경관지침”을 “제32조에 따른 경관심의 매뉴얼”로 한다.

제29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사전 검토 등) ①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받아야 하는 자는 경관위원회 심의 전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 업무 담당 부서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경관심의 매뉴얼) 군수는 경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관심의 매뉴얼을 정할 수 있다.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관위원회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관위원회 자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제23조관련)

구 분	건축물의 경관심의·자문대상	예 시	심의대상 규모
1. 공공 건축물	공공청사	군청, 행정복지센터 등	연면적 1,000㎡ 이상
	군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도서관, 복지회관, 예술회관, 박물관 등	
	군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여객선터미널,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등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	소방서, 우체국 등	
	문화·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등	
	화장시설	화장장, 납골당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2. 일반 건축물	해안경관 관리지역	해안도로와 해안선을 경계로 하는 육지지역의 신규조성 건축물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330㎡ 이상
	마을경관 관리지역	해발고도 80m 등고선 이하 전 지역의 신규조성 건축물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
	중점경관관리구역	남해읍 집중개발형 중점경관관리구역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남해스포츠파크 집중개발형 중점경관관리구역	
독일마을 집중개발형 중점경관관리구역			
※ “연면적” 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되, 연면적 산정 시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 략)</p> <p>5. “경관지침”이란 건축물, 가로(街路),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 관 요소에 대한 관리방안을 밝힌 지침 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 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 한다.</p> <p>1. · 2. (생 략)</p> <p>3. 주요 경관 요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경관지침 운용</p> <p>4. ~ 9. (생 략)</p>	<p>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제32조에 따른 경관심의 매뉴얼 -----</p> <p>4. ~ 9. (현행과 같음)</p>
<p>제23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 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경관지구의 건 축물(「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 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p> <p>②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 표 제1호의 심의대상 공공건축물을 말한 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 1조 등에 따라 설계공모방식을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제23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하는 대상은 별표로 정한 건축물 을 말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 축물은 경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 다.</p> <p>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른 자연취 락지구 내 건축물</p> <p>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건축물</p> <p>3.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p>

③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 표 제2호의 심의대상 일반건축물을 말한다.

<신 설>

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의 건축물

4.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5. 층수가 2층 미만이고 연면적 330㎡ 미만의 건축물

6. 건축물의 외부디자인(형태, 소재, 색채 등)이 100분의 30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

7.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의 변경사항이 기존 면적, 층수, 높이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

<삭 제>

제2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업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① ~ ④ (생략)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2. (생략)
- 3. 경관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 4. (생략)

제29조(경관위원회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 3. (생략)
- 4.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의 색채
- 5. (생략)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경관위원회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수행할 수 있다.

⑥ ----- 제5항-----

-----.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

-----.

- 1. 2. (현행과 같음)
- 3. 제32조에 따른 경관심의 매뉴얼-----
- 4. (현행과 같음)

제29조(경관위원회 자문대상)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현행과 같음)

6. 별표에 따른 자문대상 건축물

7. (생략)

<신설>

<신설>

<삭제>

7.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사전 검토 등) ①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받아야 하는 자는 경관위원회 심의 전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 업무 담당 부서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32조(경관심의 매뉴얼) 군수는 경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관심의 매뉴얼을 정할 수 있다.

남해군 공고 제 2024 - 267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 자)	대표자 (성 명)	성동0	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
	소하천명		심천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1287-1번지(1051관련)		
	면적	1.0m ²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²
	기간	2023. 01. 27. ~ 2027. 12. 31.		
	목적 및 사유	태양광발전소 모듈설치 부지 우수관 설치 및 우수 배출		

남해군 공고 제 2024 - 296호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건축조례」

2. 개정이유

건축법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이 행정안전부 추진 2024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확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반영하고 현행조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개정(안 제28조)

1) 근거 : 행정안전부 및 공정위 합동으로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추진

2) 내용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를 대한건축사협회 남해지역건축사회 소속건축사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제한 문구 삭제

나.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개정(안 제44조)

1) 근거 : 건축법시행령 개정 「2023.09.12.(시행2023.09.12.)」.

2) 내용 :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 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 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내용을 개정함.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4년 3월 12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092, 팩스 055-860-373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도시건축과 건축민원팀(전화 055-860-30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중 “대한건축사협회남해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 라 한다)” 를 “대한건축사협회”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사회” 를 “대한건축사협회” 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9미터” 를 각각 “10미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 행) ① (생 략)</p> <p>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업 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현 장조사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 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u>대한건축사협 회남해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 회”라 한다)</u> 소속 건축사</p> <p>③ 수수료의 지급방법과 대행절차 등은 <u>건축사회</u>와 협의하여 정한다.</p> <p>제4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 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 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p> <p>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1.5미터 이상</p> <p>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해당 건 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p> <p>② ~ ⑥ (생 략)</p>	<p>제28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 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대한건축사협회</u> ----- -----</p> <p>③ ----- <u>대한건축사협회</u>-----.</p> <p>제4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 ----- ----- ----- -----.</p> <p>1. --- 10미터 -----</p> <p>2. --- 10미터----- -----</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남해군 공고 제 2024 - 301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 개정사항 반영

3.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다자녀 양육자(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추가
-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응시요건 중 ‘고등학교·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졸업자 등)로 수정
- 과장급 이상 시간선택임기제 응시요건 중 관리자 경력 요구 명확화
- 응시원서 사진 부착란 ’ 탈모 ’ 용어 대신 ’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으로 표현 수정

4. 의견제출

-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2425)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전화 860-3113, 팩스 860-373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860-3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별표 5의3,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② (생략)</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p> <p>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p> <p>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p> <p>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p>

[별표 5의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제14조제10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 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 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 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한시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 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우)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수입증지 붙이는 곳



※응시번호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천연색 사진
(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 시 원 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①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4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③ 응시연도 및 회 수	()년도 제 회	
응시지구(기호) 응시번호	지구	번
직 급 별	급 직	

※등록번호	제 회 번
※ 급	직

① 성 명	(한글)	② 희망지역	※ 등록심사	
	(한문)	제1지역	시군	사진대조
	(영문)	제2지역	시군	서류심사

④ 주 소			(사진부착)
⑤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대폰 :		
⑥ 병 역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⑦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진공·부문·과목

⑧ 자 격 면 허		⑨ 상 별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⑩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령청

(※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① 비상연락처

관계	성 명	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 기재 요령

-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안에 한자를 쓴다.
-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 과 같이 약기한다.
- 다. 각 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 ② 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 ③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 ⑥ 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판',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 ⑨ 상 별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 ⑪ 비 상 연 락 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남해군 공고 제 2024 - 312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3일

남 해 군 수

- 목적**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해소되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하고자 함.
- 행정예고 기간** : 2024. 2. 23. ~ 2024. 3. 7.(14일간)
- 의견제출 기간** : 2023. 2. 23. ~ 2024. 3. 7.(14일간)
- 공고방법** :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등
-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대상지

지구명	위치	지정개요			지정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m ²)		
감암지구	남해군 노량리 558-11 일원	해일 위험	가	48,000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소 해소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해군청 재난안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 및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다. 기타 필요사항 등
-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편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 전화 : 055) 860-3294
-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의견 제출서(서식) 1부.
 2. 지정 해제도면 1부. 끝.

[붙임 1]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감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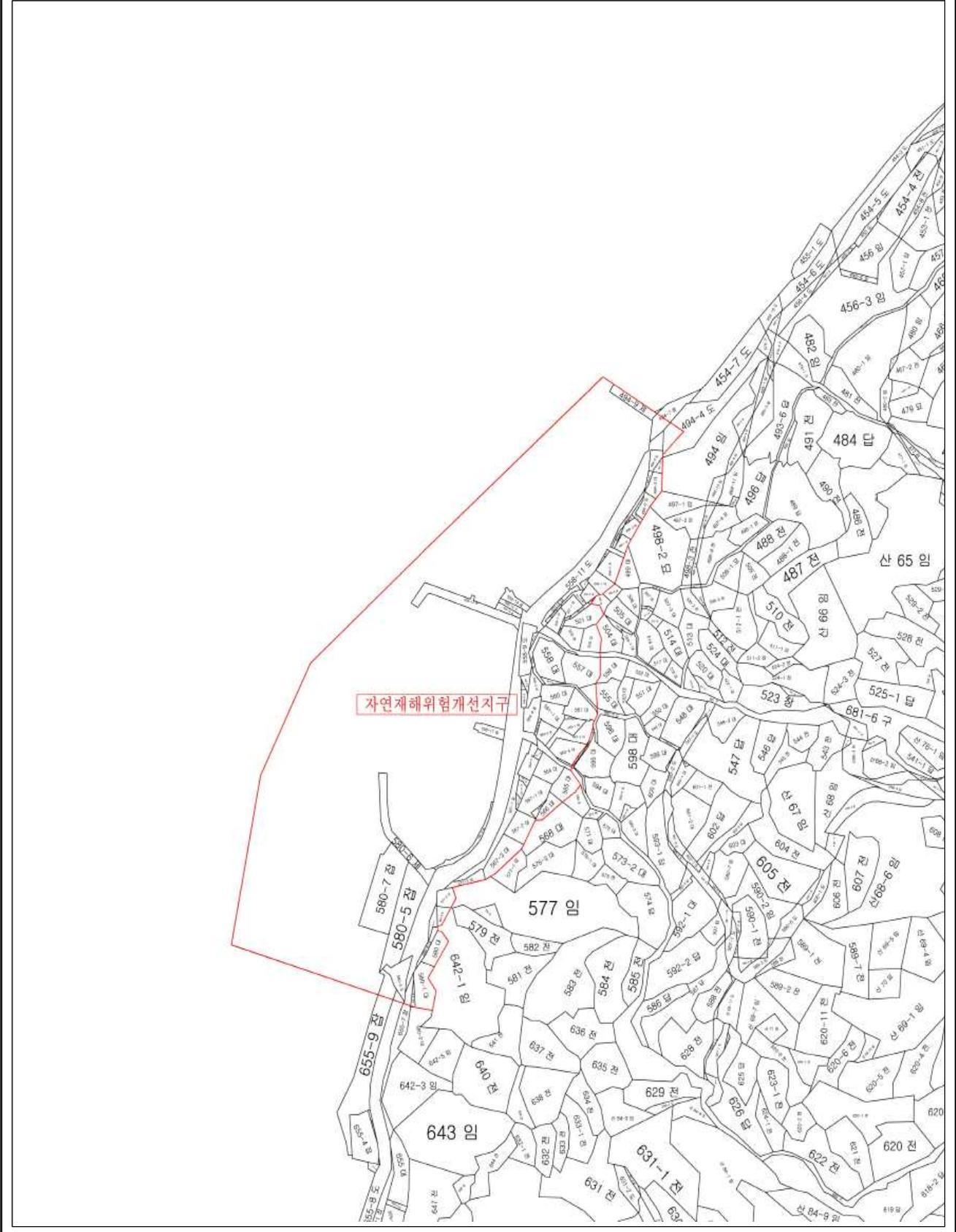
남해군수

귀하

유의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지정해제도면



남해군 공고 제 2024 - 333호

문항 전원마을 주택용지 재분양 공고

농어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남해군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한 문항 전원마을 주택용지에 대한 분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27.

남 해 군 수

- 마을명칭 : 문항 전원마을
- 위 치 : 경남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1491
-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 분양내역

용 도	필지수	총면적 (m ²)	분양 가격(원/m ²)	분양방법	분양신청	위치선정	계 약
단독 주택용지	2	1,200	228,500	선착순 분양	2024.2.27.~ 2024.12.31.	신청즉시 (신청당시 잔여필지 중 신청)	신청일~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분양가격은 평균가격이며 필지별 분양가격이 다르므로 분양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분양대금의 납부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잔 금	비 고
금 액	15,000천원	분양예정가 60%	분양예정가 40%에서 계약금을 뺀 금액	
납부시기	분양신청 시 납부 (고지서발부)	계약 후 6개월 이내	건축완료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납부	

6. 분양신청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경제과 지역개발팀

7. 분양신청자격 및 순위

- 남해군 문항 전원마을에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자
 - ※ 1세대주 1필지를 초과할 수 없음

8. 필지별 분양계획 : 선착순 희망필지 분양

9. 분양신청시 제출서류

- 분양신청
 - 분양신청서(첨부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분양모집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에 한함)
 - 분양신청금납부필증(분양신청장소(남해군 경제과)에서 고지서 수령 후 납부) /

* 신청즉시 분양신청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청자 인감증명서 일반용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및 인감도장 지참

○ 위치선정 : 신청당시 잔여필지 중 신청자의 희망필지 분양

○ 위치선정시 필요사항 : 분양계획서 참고

10. 분양선정 및 계약체결 불이행시의 조치 :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양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양을 취소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후 취소시 분양계약서에 따라 분양신청금이 사업시행자(남해군)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분양신청 및 가격, 대상자 선정, 계약체결 및 계약취소, 사용예정시기, 주택건축, 입주예정일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남해군 경제과 지역개발팀에 비치되어있는 문항 전원마을 주택용지 분양계획서 및 문항 전원마을 건축설계·시공 지침을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남해군청 경제과 지역개발팀 (☎ 860-3614)

남해군 공고 제 2024 - 334호

화계 전원마을 주택용지 분양 공고

농어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남해군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한 화계 전원마을 주택용지에 대한 분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27.

남 해 군 수

- 마을명칭 : 화계 전원마을
- 위 치 : 경남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615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 분양내역

용 도	필지수	총면적 (㎡)	필지별 (㎡)	평균분양 가격(원/㎡)	분양방법	분양신청	위치선정	계 약
단독 주택용지	7	4,197.6	480~760	218,357	선착순 희망필지 분양	2024.2.27.~ 2024.12.31.	신청즉시 (신청당시 잔여필지 중 신청)	신청일~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분양가격은 평균가격이며 필지별 분양가격이 다르므로 분양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분양대금의 납부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잔 금	비 고
금 액	15,000천원	분양예정가 60%	분양예정가 40%에서 계약금을 뺀 금액	
납부시기	분양신청 시 납부 (고지서발부)	계약 후 6개월 이내	건축완료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납부	

- 분양신청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경제과 지역개발팀
- 분양신청자격 및 순위

○ 남해군 화계 전원마을에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자

※ 1세대주 1필지를 초과할 수 없음

8. 필지별 분양계획 : 선착순 희망필지 분양

9. 분양신청 시 제출서류

○ 분양신청

- 분양신청서(첨부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분양모집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에 한함)

- 분양신청금납부필증(분양신청장소(남해군 경제과)에서 고지서 수령 후 납부) /

* 신청 즉시 분양신청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청자 인감증명서 일반용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및 인감도장 지참

○ 위치선정 : 신청당시 잔여필지 중 신청자의 희망필지 분양

○ 위치선정시 필요사항 : 분양계획서 참고

10. 분양선정 및 계약체결 불이행시의 조치 :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양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양을 취소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후 취소 시 분양계약서에 따라 분양신청금이 사업시행자(남해군)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분양신청 및 가격, 대상자 선정, 계약체결 및 계약취소, 사용예정시기, 주택건축, 입주예정일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남해군 경제과 지역개발팀에 비치되어있는 화계 전원마을 주택용지 분양계획서 및 화계 전원마을 건축설계·시공 지침을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남해군청 경제과 지역개발팀 (☎ 860-3614)

남해군 공고 제 2024 - 336호

화계 전원마을 근린용지 분양 공고

농어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남해군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한 화계 전원마을 근린용지에 대한 분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27.

남 해 군 수

- 마을명칭 : 화계 전원마을
- 위 치 : 경남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628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 분양내역

용 도	필지수	총면적 (㎡)	필지별 (㎡)	평균분양 가격(원/㎡)	분양방법	분양신청	위치선정	계 약
근린 생활용지	2	1,327.2	596~730	319,500	선착순	2024.2.27.~ 2024.12.31..	신청 시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분양가격은 평균가격이며 필지별 분양가격이 다르므로 분양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분양대금의 납부

구 분	계약금	증도금	잔 금	비 고
금 액	15,000천원	분양예정가 60%	분양예정가 40%에서 계약금을 뺀 금액	
납부시기	분양신청 시 납부 (고지서발부)	계약 후 6개월 이내	건축완료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납부	

6. 분양신청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경제과 지역개발팀

7. 분양신청자격 및 순위

- 남해군 화계 전원마을에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자
- 남해군 화계 전원마을에 주택용지 분양자도 신청 가능

※ 1세대주 1필지를 초과할 수 없음

8. 필지별 분양계획 : 선착순

9. 분양신청시 제출서류

○ 분양신청

- 분양신청서(첨부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분양모집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에 한함)
- 선정이후 : 분양신청금납부필증(분양신청장소(남해군 경제과에서 고지서 수령 후 납부) / 선정 즉시 분양신청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청자 인감증명서 일반용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및 인감도장 지참

○ 위치선정 : 신청 당시 신청자의 희망필지 분양선정

○ 위치선정 시 필요사항 : 분양계획서 참고

10. 분양선정 및 계약체결 불이행시의 조치 :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양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양을 취소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후 취소시 분양계약서에 따라 분양신청금이 사업시행자(남해군)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분양신청 및 가격, 대상자 선정, 계약체결 및 계약취소, 사용예정시기, 주택건축, 입주예정일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남해군 경제과 지역개발팀에 비치되어있는 화계 전원마을 주택용지 분양계획서 및 화계 전원마을 건축설계·시공 지침을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남해군청 경제과 지역개발팀 (☎ 860-3614)

남해군 공고 제 2024 - 342호

노도호 선장 채용 공고

노도호 도선운항을 위하여 선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선박 운항의 경험이 많은 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2024년 2월 29일

노도도선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백만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기간	운항구간
노도호 선장	1명	도선운항 및 부대시설 등 도선 및 기관 전반에 대한 사항 관리, 승하선 승객 보조, 선박 안전상태 관리	2024. 4. 1. ~ 2025. 3. 31.	노도 ~ 벽련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4. 4. 1. ~ 2025. 3. 31. ※ 매주 화요일 휴무
- 운항횟수 : 1일 6회 운항(승선정원 초과 시 추가운행 필수)
(운항 시간표 참고)
- 월 급 여 : 2,600,000원
- 상 여 금 : 기본급 200%(설, 추석 명절 연 2회)

3.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남해군에 주소를 둔 자
- 지원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 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사람
- 사회통념상 직무수행이 부적절한 자를 제외한 신체건강한 사람
- 주말 및 공휴일 근무가 가능한 사람
- 필수면허를 소지하고 필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남해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9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필수면허(아래 면허 중 1개 이상)
 - 소형선박조종사
 - 6급항해사(소형선박직무기관교육이수)
 - 6급기관사(소형선박직무항해교육이수)
- ※ 필수교육(아래 교육 모두 이수)
 - 상급안전교육
 - 연안선직무교육
 - 인권교육 심화과정

4. 원서접수 일정

- 접수기간 : 2024. 3. 4.(월) ~ 3. 11.(월)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 연락처 : 055-860-3444

5. 채용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직무수행계획 설명 및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검증
 - 구체적인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은 추후통보
- ※ 직무수행계획 설명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는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3. 18.

※ 최종합격자는 계약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이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노도호 선장 지원 신청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 합격자 등록 시 제출)
- 면허·자격증 1부.
- 교육 이수(수료)증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되는 자에 한함)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함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 통지 후 신체검사서 결과 부적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차순위 대상자에게 기회를 부여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연락처 : 055-860-3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4-355호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 사항을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28.

남 해 군 수

건설업등록 내역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업종등록번호	등록일자	비고
		주력분야		
(주)흥원건설 김*숙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923-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남해2024-04-01)	2024.02.27.	
		석공사		